



2026-07-17

(26-5196)

페이지: 1/1

무역기술장벽위원회

원문: 영어

통보

부록

다음의 2026년 7월 17일자 통보문은 일본 대표의 요청으로 회람한다.

제목: CO2 저장 시설 기술 기준 제공을 위한 부령

부록 사유:	
☐	의견 마감일 변경 - 날짜:
☐	통보 조치의 채택 - 날짜:
☒	통보 조치의 공표 - 날짜: 2026-04-10
☒	통보 조치의 시행 - 날짜: 2026-05-22
☒	최종 조치 전문 확인 출처 ¹ : https://www.meti.go.jp/policy/safety_security/industrial_safety/sangyo/ccs/index.html
☐	통보 조치의 철회 또는 취소 - 날짜: 조치가 재통보된 경우 관련 통보문 기호:
☐	변경된 통보 조치의 내용 또는 범위 및 전문을 확보할 수 있는 출처 ¹ : 새로운 의견 수렴 마감일(해당될 경우):
☐	발행된 해석 지침 및 전문 조회 ¹ :
☐	기타:

내용: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은 저장사업자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CO2 저장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86조 제1항은 이산화탄소 배관 운송 사업자가 기술 기준에 근거로 이산화탄소 배관 운송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 안전을 유지하고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광산안전법, 가스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참조하여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CO2 저장시설 기술기준 제공을 위한 장관 명령을 제정하였다.

¹ 최종 조치 및/또는 해석지침 문서의 전문을 얻을 수 있는 웹사이트 주소, PDF 첨부파일, 기타 정보를 포함한다.